

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2653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5376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265378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민석, 최성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김성준, 우진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순영

변론종결 2022. 12. 15.

판결선고 2023. 1. 12.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5,050,877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5,050,87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9년 이전부터 C에게 형광등 기구 등을 공급하여 주었고, 2019. 10. 10. 기준으로 45,050,877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80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20. 7. 27. ‘C는 원고에게 157,633,91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0. 8. 14.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1) C는 2019. 10.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C는 적극재산으로 시가 933,241,12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C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45,050,877원외에 D은행에 대한 채무 1,026,510,000원(= 220,000,000원 + 140,000,000원 + 45,000,000원 + 189,440,000원 + 207,100,000원 + 150,000,000원 + 74,970,000원),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34,393,515원(= 20,992,005원 + 13,401,510원), F카드에 대한 채무 30,000,000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2021. 9. 16. 위 경매절차에서 56,519,230원을 배당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은행, E 주식회사, F카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2022. 12.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는 당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던 중, 2022. 12. 14.자 청구원인 변경신청, 2022. 12. 1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하여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허용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추가하고자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채권자대위권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이 사건 소는 2021. 10. 14.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허가하지 않는다.

3.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취소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45,050,877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사해행위의 성립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 추정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C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고 이 때문에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다음날인 2019. 10. 11. C 명의의 예금계좌로 9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C는 같은 날 위 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하고, H에게 98,6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C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오히려, 피고는 I의 소개로 영업이 원할하지 않아 약속어음을 결제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인 C를 만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고 있다(피고의 2022. 5. 17.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1)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저당권설정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이미 입찰절차에 의하여 낙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을 때에는 낙찰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르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입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고, 수익자가 받은 배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해 지급받은 배당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56,519,230원을 배당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9. 10. 10. 기준 물품대금 채권 45,050,877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5,050,877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050,87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별지